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행위 등 제한〉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1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강대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행위 등 제한	2

【참고자료】

1.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	8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행위 등 제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1)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²⁾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9조³⁾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⁴⁾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⁵⁾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 3) 【참고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5)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분

구 분		제한 내용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행위 및 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여부 결정

분뇨 처리시설, 악취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사체 등 소각·매몰지, 화장시설·봉안 시설·자연장지,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청소년유해업소 등이 있으며(법률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에는 총포·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담배자동 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경주장 및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등이 있음(법률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제9조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6)에 따른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대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카지노업’이란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도박⁷⁾의 한 종류로,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7)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이 도박중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8건, 2018년 76건, 2019년 100건, 2020년 112건, 2021년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⁸⁾,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28,838명으로 확인되었음.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합계
남	11,511	8,888	20,399
여	4,798	3,641	8,439
소 계	16,309	12,529	28,838

자료: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출처: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한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인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도박중독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등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준국어대사전)

8) “도박위험요인이 청소년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김민지, 경기대학교 대학원, 5p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동 개정안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대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⁹⁾,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¹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¹¹⁾의 경우 「교육환경법」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업’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질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음으로, 2024년 7월 현재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18곳으로¹²⁾, 이들에 대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³⁾.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카지노업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7

12) 17개의 영업장이 외국인 전용임.

13) 18개의 영업자 중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만 200m 주변에 학교(부전초등학교)가 위치함.

참고자료 1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

시.도	업 체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종사원수 (명)	허가 면적(m ²)
서울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히점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5성)	968	2,694.23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893	2,158.32
	세븐럭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525	2,137.20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5성)	337	1,583.73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78.10.29	임대 (5성)	265	1,483.66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직영 (5성)	852	8,726.80
	인스파이어 카지노(인스파이어) 【(주)인스파이어 인터그레이티드 리조트】	'24.01.23	직영 (5성)	1,063	14,372.00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5성)	5	632.69
대구	호텔인터볼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5성)	154	1,485.24
제주	공즈카지노 【길상창회(유)】	'75.10.15	임대 (5성)	65	1,604.84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5성)	187	1,159.92
	세븐스타카지노 【(주)청해】	'91.07.31	임대 (5성)	170	1,175.85
	제주오리엔탈카지노 【(주)건하】	'90.11.06	임대 (5성)	50	865.25
	드림타워카지노(제주드림타워) 【(주)엘티엔터테인먼트】	'85.04.11	임대 (5성)	742	5,529.63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5성)	63	1,509.12
	랜딩카지노(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90.09.01	임대 (5성)	311	5,641.10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95.12.28	임대 (5성)	33	1,347.72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외국인 전용)			직영:3 임대:14	6,683	54,107.3
강원	강원랜드카지노(하이원리조트) 【(주)강원랜드】	'00.10.12	직영 (5성)	2,077	15,481.19
14개 법인, 18개 영업장(내·외국인)			직영:4 임대:14	8,760	69,588.49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조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021. 9. 24.>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